



법적 통합



ICRC

법적 통합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동 아시아지역 대표부
齊家園外交公寓B2
建國門外大街9
베이징 100600, 중국
전화: +86 10 8532 3290 **팩스:** +86 10 6532 0633
이메일: beijing.bej@icrc.org
웹사이트: www.icrc.org
© ICRC, 2008년 11월



ICRC

한국어 감수를 도와주신 박중섭대령님께 감사 드립니다.
표지사진: Bob Strong/Reuters

목차

서론	1
제1장 적용가능한 법의 국내 이행	4
1.1 법률 체제	5
1.2 국내 이행	9
1.3 책임	12
1.4 현실 점검	15
제2장 통합	16
2.1 통합의 개념	17
2.2 기본 요건	20
2.3 통합 프로그램	21
2.4 군사교리로의 통합	23
2.5 교육으로의 통합	26
2.6 훈련으로의 통합	29
2.7 장비	32
2.8 효과적 제재조치	35
제3장 ICRC의 지원	36
3.1 ICRC와 국제법	37
3.2 ICRC의 역할	40

서문



Thomas Dworzak/Magnum Photos

서문

본 책자는 국가와 그 군대 및 경찰이 국제법적 의무를 국내에서 이행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무력을 사용할 권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무력충돌, 국가 위기상황, 국내 소요사태 혹은 평화유지 활동에 관계없이 그러하다. 국제적 수준에서 군사 및 경찰 작전을 통제하는 규칙과 법적 기준은 무력충돌법과 인권법에 잘 나타나 있다.

법의 집행 또는 전투 임무라는 것은 상당한 권한을 수반하게 되는데, 그 권한이라는 것은 즉, 사람과 그들의 재산을 검문하는데 필요한 힘과 치명적 공격을 방어하거나 또는 부상을 입히고 살해함으로써 일정 집단 구성원의 전투력을 상실케 하기 위해 무력 -화기를 포함- 을 사용하는 권한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의 사용에는 동등한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무력의 사용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언제나 특정한 법적 틀 안에서 발생한다. 국제적 차원에서 이러한 규칙과 법적 기준들은 국제인도법(IHL)과 국제인권법(IHRL)에 정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전 세계 많은 정부당국과 무력보유

자들은 군사작전 시 적용되는 법의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으며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법의 위반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더 그 법의 준수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동 분야에서의 경험과 최적의 선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무력충돌 및 기타 다른 폭력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원조할 의무를 국제사회로부터 위임 받아왔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또한 국제인도법을 증진하고 국제인권법 - 즉 폭력상황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특정한 기본 규정들 - 이라 알려진 법의 상대적으로 작지만 필수적인 부분들을 재고함으로써 인간의 고통을 예방코자 노력하고 있다.

이 책자는 ICRC가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얻은 교훈을 모두 기술하고 있으며 정부 당국과 무력보유자들 중 최고위급인사들에게 우리가 “통합”이라 명명하게 된 과정의 총 개요를 제공코자 한다. “통합”과정이란 법을 규정들을 그 법의 준수를 약정키 위한 구체적인 장치와 조치들로 바꾸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방법들을 채택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통합은 지속적인 과정으로 반드시 군사교리, 교육, 훈련 그리고 장비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며 효과적인 제재 체계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본 문건의 내용은 세 장으로 나뉘어 있다. 제1장은 무력사용에 적용되는 법률 체계와 이 법률의 시행과 보급에 있어 최고 당국의 책임을 알려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무력보유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관련법률을 군사교리, 교육, 훈련, 장비로 통합하는데 대한 기술적인 측면들을 설명해주고 제재조치의 주요한 역할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3장은 ICRC와 국제법의 관계 그리고 합법적 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ICRC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들에 관해 논하고 있다.

본 문건은 주로 국가와 그들의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 주요 내용은 추론에 의해 무력충돌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존중할 의지가 있고 또한 그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비국가적 무장단체에 적용될 수 있다.



1.1 법률 체계

무력사용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특정 규정에 의해 제한된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은 상호 보완적이다. 서로 관점은 다를지라도 이들 모두 생명과 건강,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려 노력한다. 또한, 두 법 모두 무력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동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무력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성문화되고 발전되어왔다. 국제인도법은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자(또는 더 이상 가담할 수 없는 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모든 충돌당사국에게 의무를 부가한다. 국제인권법은 평화 시와 전쟁 시 동일하게 항상 개인을 보호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은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기본 목표는 개인이 속한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자의적인 행위들로부터 그 개인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보호가 효과적이기 위해 국제적 규정들은 국내법률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인권 관련 법률 문서들은 각 국 정부가 심각한 공공의 위협(예를 들어, 내부소요사태 또는 무력충돌)에 직면했을 때, 제한된 조건하에서, 특정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을 허

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하에서도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핵심적 기본권리는 존재한다. 국제인도법 하에서는 어떠한 침해도 용인되지 않는데 이는 이 법이 긴급상황에서 무력의 사용과 개인의 권리 및 존엄성을 보호할 의무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을 발단으로 입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력사용은 언제나 법률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며 어떠한 법적 공백도 있을 수 없다.



Pascal Lauener/Reuters

제1장 적용 가능한 법의 국내 이행

국제인도법(IHL)

국제인도법은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무력충돌의 효과를 제한코자 하는 일련의 규칙들이다. 국제인도법은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또는 더 이상 가담하지 않는 자)를 보호하고,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제한한다. 국제인도법은 또한 “전쟁법” 또는 “무력충돌법”이라 알려져 있다.

1949년 개정되고 확대되어 온 제네바협약은 다음의 집단 구성원을 보호하는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제1조약: 육전에서의 병자와 부상자
- 제2조약: 해상 병자, 부상자, 난선자
- 제3조약: 전쟁포로
- 제4조약: 전쟁 시 민간인

4개의 제네바 조약은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국제조약이며 전세계적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적대행위를 통제하는 규정들은 1899년과 1907년 헤이그협약에 제정되어 있다. 이 규정들은 충돌 당사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투의 방법과 수단을 제한한다. 본질적으로, 적정하고 허용가능한 무기와 군사전술의 사용을 정의함으로써 무력충돌 시 군사작전 행위를 규제한다.

개인의 보호와 적대행위에 관한 규정들은 1977년 채택된 두 개의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에 모두 집약되고 보완되었다. 몇몇의 다른 조약들 즉,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1954년 헤이그협약, 1980년의 특정 재래무기에 관한 협약, 1997년의 대인지뢰 사용금지 및 폐기협정,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적십자/적신월과 함께 추가 표장(일반적으로 적수정이라 일컬어짐)을 제정한 2005년 제네바협약에 추가된 의정서(제3의정서) 등이 위의 규정들을 보완하고 있다.

조약이란 보통 비준이란 절차를 통해, 그 조약에 의해 구속되는 것에 동의한 국가들에 한해 구속력을 가

진다. 이러한 성문화된 의무들은 법으로서 인정받은 보편적 관례로부터 도출된 관습법에 의해 보완된다.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은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정부당국으로부터 특정 수준의 보호, 행위,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 일련의 원칙과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보편적 국제인권법 전문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1949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 1966년 채택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1966년 채택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1984년 채택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금지 규약
- 1989년 채택된 아동 권리 협약

지역적인 법률문서들- 유럽 인권 조약, 미주기구헌장, 아프리카인권선언 등-은 국제조약들을 보완한다.

법 집행을 책임진 전문가들은 특히 UN의 법률집행관 행동 수칙(CCLEO, 1979) 및 법률집행관의 무력 및 화력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BPUFF, 1990)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두 문서들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소위 “비구속적 법률(soft law)”이라 알려진 것들이다. 그러나 이 문서들은 법과 질서의 유지와 관련된 특정 문제들에 있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핵심 부분”

국제인권법 문서들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한 기본 권리들은 절대 침해될 수 없다. 특히, 생존권, 고문 및 비인도적 처벌 및 대우 금지, 적법성의 원칙 그리고 법의 비(非)소급원칙 등이 이에 포함된다. 국제인도법이 매우 특별한 상황에 적용되기 때문에 인권법의 “핵심부분”은 국제인도법이 규정하는 근본적인 법적 보장사항들과 일치되어 가고 있다. 비국가 무장단체에 적용될 수 있는 1949년 4개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는 이러한 “핵심” 권리들을 잘 요약하고 있고, 내부 폭력사태가 무력충돌의 발발로 치달았을 때 무력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최소의 기본 규칙들을 마련하고 있다.

1.2 국내 이행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조약 및 협약들은 반드시 국내 이행 입법을 통하여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제조약 및 협약의 체결당사국이 된다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국가는 그들이 서명한 국제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채택해야 하는 분명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모든 규정들에 해당되겠지만 전쟁과 법의 집행을 통제하는 규정들에게는 국내 이행조치가 더욱 중요한데, 이 규정들은 무력사용이라는 가장 복잡 다단하고 민감한 주권의 영역을 규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법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지도자는 모

든 범위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체계적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중 몇몇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반면 다른 몇몇은 국제인도법과 특별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은 분명 다양한 분야와 관련을 갖는데, 보통 입법부, 사법부, 군대 또는 법 집행 부서 등 다수의 부처들과 연관된다. 따라서 최고 당국의 주의 깊은 계획이 요구되며, 여러 부처간 긴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 공통된 조치들

정치 당국은 반드시 많은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일부는 비교적 상식적인 반면 기타 다른 조치들은 복잡한 이행 절차 및 특정한 전문기술이 요구된다.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국제조약 및 협약들을 자국어로 번역함
- 무기보유자와 주민 전체에게 가능한 한 널리 그 조항들을 보급함

- 국내법률과 국제조약 및 협약들의 조항들이 일치되도록 하며 별도의 법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하여 위반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을 제정함
- 사법적 그리고 기타 기본적 보장이 존중되도록 확인함

국제인도법이 요구하는 특정 조치들

국제인도법의 이행은 부가적인 조치들의 시행을 필요로 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보호받는 사람과 목표물은 적절하게 파악되고 표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적십자와 적신월, 적수정 그리고 국제조약 및 조항 내 명기된 다른 보호 표장 및 상징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채택함
- 군대 내에 관련 인력, 특히 법률자문관을 임명하고 훈련시킴
- 각국 적십자사 또는 적신월사, 기타 자발적 원조단체, 민방위기구, 정보국 (보호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관리 책임자)들의 설립 및 규제를 법적으로 규정함
- 보호받는 사람과 목표물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군부대의 위치를 정함.

전체적 접근

국방부와 내무부를 비롯하여 몇몇 정부부처는 동 법률의 국내 이행과정에 관련되어 있다. 가장 연관성 있는 부처는 법무부, 재정부, 교육부, 문화부, 그리고 외무부이다. 예를 들어, 문화부는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1954년 헤이그협약을 적용하는데 분명 관여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젊은이들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기본원칙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무력충돌 시 발생하는 실종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각 국가 정보국(통상적으로 외무부 산하기관임)의 설립과 같은 행정적 조치들도 요구된다.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 나아갈 국가 인도주의 / 인권 위원회 또는 유사 단체를 설립해 왔다. 이러한 정책결정 및 조정의 장(場)은 정부 부처 대표 및 국공립기구, 전문가 집단, 그리고 기타 책임자 및 법 이행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두 불러모은다. 이러한 단체는 일반적으로 동 법의 국내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 판명되어 왔다.

1.3 책임

최고 정부 당국은 동 법의 준수에 있어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광범위한 보급, 위반의 금지 및 억제 를 포함하여 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 사항을 완수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 방법과 장치들은 적절히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한 최종적인 책임은 분명히 최고 정부 당국의 손에 놓여 있다. 이는 국제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을 구성하는 조약들 내에 전

반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정치지도자와 무력보유자 중 최고위층이 전반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이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책임은 각각 다른 수준에서 의무와 기능에 따라 타 계층에 부여되기도 한다.

국제인도법 상의 책임

분명한 책임사항들이 이전의 다른 국제조약 내에서 공인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1907년 10월 18일 육전에서 의 법규 및 관행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국가는 그들의 육군에게 지침을 내려 기존의 조약에 부가된 육전에서의 법규 및 관행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제1조)

1949년 채택된 제4 제네바협약은 국가의 책임에 관해 많이 언급하고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 본 협약을 존중할 것과 본 협약의 존중을 보장할 것을 약속(제1조)할 일반적 필요성을 넘어서서, 다른 조항들은 “가

능한 한 널리 법조문을 보급할” 것과 “그것으로부터 군사교육 계획에 대한 연구를 포함시킬” 의무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 상세히 하자면, 제3 제네바 협약은 “전시에 있어서 포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군당국과 기타의 당국”은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127조)고 규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1977년 6월8일 채택된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는 이러한 의무를 더욱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특히, 모든 전쟁 당사자들은 “자국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체 없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명령과 지시를 내려야 하며” 그리고 “그 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제80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군 또는 민간당국은 그것의 본문에 정통하여야 하며”(제83조 제2항) “군지휘관들이 그들의 책임수준에 상응하게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구성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알고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7조 제2항)라고 정하고 있다.

국제인권법 상의 책임

인권 관련 법률문서에는 국제조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국가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66년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각 당사국은 [...]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제2조) 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타 조치”가 의미하는 바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제네바협약 제2의정서는 “본 의정서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보급되어야 한다” (제19조) 고 명기하고 있다. 법 존중의 의무와 같은 이러한 의무는 따라서 정부 군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적대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무장 단체에도 적용된다.

국제인도법의 보급과 무기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과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너무나 널리 알려져 관례가 되어버렸다.

를 더욱 상세히 열거하기 위해, 상기 언급한 국제규약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 논평 제31번은 “국가는 법적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법률적, 사법적, 행정적, 교육적 조치 및 기타 적합한 조치들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7절)

이와 유사하게,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 및 처벌에 대한 금지 규약은 각

조약 당사국이 “모든 고문행위는 형법에 의거, 위반이다” (제4항)라는 것을 확실히 약정해야 하며 “여하한 형태의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의 구금·심문 또는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군의 법집행요원, 의료인, 공무원 및 그 밖의 요원들의 훈련과정에 고문방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가 충실하게 포함되도록 보장한다.”(제10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제42조)고 명시하고 있다.

지도자의 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언급들은 법집행요원의 무력 및 화기 사용에 관한 UN 기본 원칙과 같은 “비구속적 법률” 문서에도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문서의 서문에서 동문서의 기본 원칙들은 “반드시 자국 내 법률과 관례의 틀 안에서 정부에 의해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 행정부서의 구성원들, 그리고 입법부 뿐만 아니라 법집행요원, 그리고 대중에게 알려져야만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1.4 현실 점검

법의 위반은 분명 발생하고 있다. 법에 대한 지식 자체가 법의 준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무력 사용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국제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그리고/또는 국제인권법의 위반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실질적으로 모든 무력보유자들, 가장 장기간의 경험을 가지고 가장 세련된 훈련을 받은 무력보유자들조차도 이러한 위반을 행하고 있다.

물론, 부정적인 행동만이 기사화 되기 마련이며, 따라서 수많은 합법적 행위 전체를 확립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보유자들이 법을 존중할 것과 법에 대한 존중을 보장할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는 지속된다. 게다가, 위반행위가 분명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은 무력충돌 및 내부폭력의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타당한 도구로 존속하고 있다.

불법적 행위들을 피하는데 요구되는 조치, 수단과 장치들을 결정하기 위해, 위반행위 이면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종종 법 위반은 적용되는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한다고들 주장한다. 그

러나, 무력보유자들의 행동에 대한 심층 분석은 위반행위가 법의 기본 원칙을 알고 있거나 심지어 이를 고수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저질러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험에 따르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근본적인 규범들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실패는 실제로 몇몇 요인들에 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종종 동시에 발생한다. 그 요인들로는 기술의 부족, 부적절한 태도, 부당한 행동, 적정한 장비의 부족, 의지의 결여, 부적절한 지식 또는 법에 대한 (그 내용, 범위, 또는 목적) 잘못된 이해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조치의 부족 등이 포함된다.

확실히, 문제의 요지는 사람들이 그 법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법에 대한 지식을 적절한 행동으로 전환하는데 있는 것이다.

2.1 통합의 개념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은 반드시 군사작전 수행의 일부분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조약들을 비준하고 이를 국내법으로 이행 입법하는 것은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 법의 내용들을 가능한 한 널리 보급하는 것 또한 적법한 행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의 창출을 겨냥한 모든 전략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군사작전 중 무력보유자들의 행위는 다음의 4가지 요소들, 즉 1) 군사교리 2) 교육 3) 훈련 및 장비 4) 제재조치에 의해 형성된다. 법을 준수하면서 군사작전이 수행되기 위해 법은 상기 4가지 요소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ICRC가 “통합”이라 칭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조항들이 체계적으로 군사정책과 군사편람에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인용되어야만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무기 소지자들이 종종 매우 복잡할 수 있는 법률 사안에 대해 정통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법률은 군사교리, 교육, 훈련 및 장비, 그리고/또는 제재조치에 있어, 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조치, 수단과 장치들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란 사실상 일단의 일반적인 규칙들로, 때로는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전투 시 또는 법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법을 해석하고 이 법의 군사작전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수준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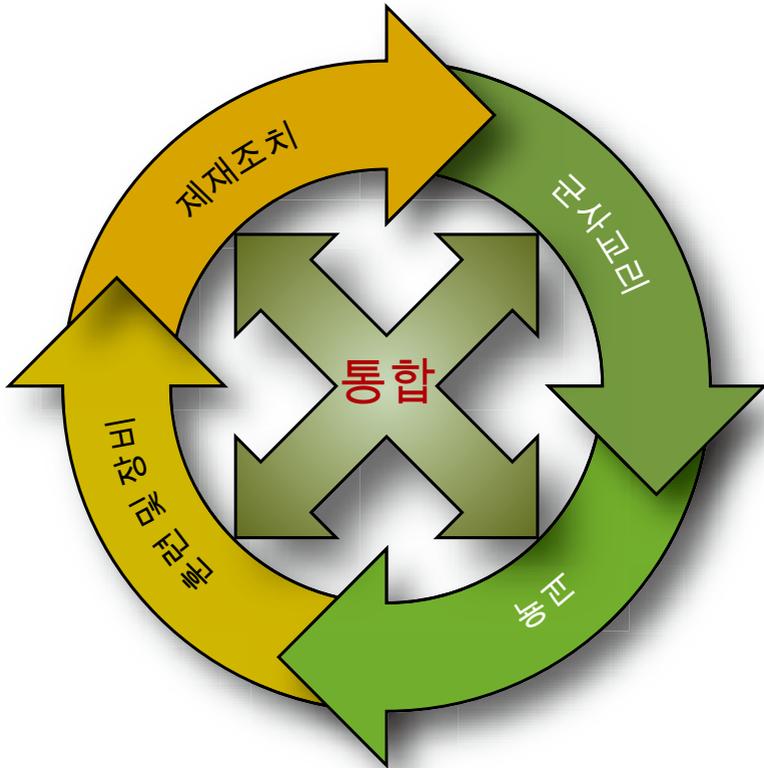
Ralph A. Clevenger/Corbis/Specter

제2장 통합

통합의 주요 요소

4가지 요소 중 군사교리, 교육, 훈련 및 장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일종의 선순환 형태를 형성한다. 법률, 장비 그리고 무력적 위협과 군사임무의 속성 등이 변화해 나감과 더불어, 군사작전 중 많은 교훈을 얻어가면서 이

러한 모든 요소들은 정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제재조치들 또한 집행되고 정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법을 총체적 과정으로 통합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끝없는 순환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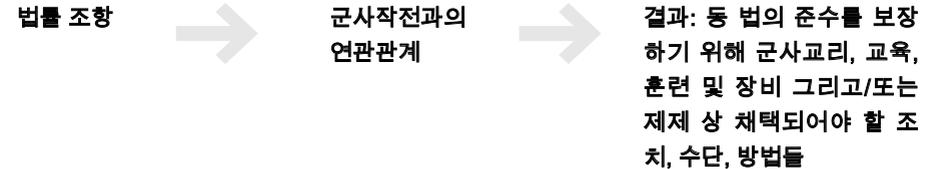


관련 조치 단행

매일의 훈련 중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적용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적법한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각각의 법률 규정들과 군사작전과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군사교리와 교육, 훈련과 장비 그리고/또는 제재단계 별로 취해야 할 조치들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다루어진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각각의 규정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동 법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하는데 관련된 주요 문제들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후 취해야 할 행동 목록을 끊임없이 마련해 나가야 한다.

특정 법률 조항들이 실제로 적용되어 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2.2 기본 요건

정치적 의지와 능력은 법의 통합을 위한 기본 선결조건의 구성요소이다.

통합이란 중-장기 과정으로, 관련기구는 전략적 비전 및 군사작전 적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즉, 최고 지휘관의 책임이 필요하다. 통합의 과정은 매우 분명한 상명하달의 과정이며 그 책임은 법을 보급하고 가르치거나 주기적으로 훈련시킬 필요성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군 최고 지휘관은 모든 부하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알려 동 법의 준수를 그 기관의 분명한 우선사항으로 정립해야 한다. 말은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군요원들이 이동함에 따라 그 책임은 통합과정의 안정과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통합과정은 반드시 긍정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을 이행해 나가는 무력보유자들의 능력은 다소 기본적인이지만 매우 중요한 요건들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 요건들은 관련 국제법 조항들과 일치하는 국내법률, 위반을 만류, 방지, 억제하기 위한 형법, 효율적인 지휘 체계와 내부 제재 조치, 지속적 교육과 훈련조직, 이름 및 형식과 상관없는 공통된 군사교

리 등이다. 무력보유자들에게 있어서, 이는 실제 행동양식을 형성하는 4가지 요소들(군사교리, 교육, 훈련 및 장비, 그리고 제재)와 관련된 어떤 종류의 체계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들이 빈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통합의 과정은 오직 부분적일 것이며 아마도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전체적인 과정은 현존하는 체계 속에서 현재의 자원을 활용하여 실행된다. 많은 비용이 들지도 않을 것이며 많은 부가교육과 훈련시간이 필요치도 않다. 교사와 교수, 교관의 수를 늘릴 필요도 없다.

통합 과정은 평화 시 또는 무력 충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더욱 용이하게 실행될 수 있다. 무력 행위자가 주요 전투작전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다른 우선요구 사항들이 통합 과정과 같은 장기적 사안들에 대신할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

2.3 통합 프로그램

통합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통합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하다.

통합은 다방면의 상명하달식 과정이기 때문에, 통합과정에는 국가지도와 국방, 안보, 또는 행정 이외에 많은 정부부처(1장 참조)를 포함하는, 국가의 최상위 계층이 참여한다. 무력보유자들 중, 모든 수준의 지휘 체계는 그 전략에서부터 전술까지 연관되어 있다. 최고 수준의 지휘관은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이 군사계획과 조직, 모든 전투 수행과 그리고/또는 법 집행 작전과 통합되어야 함을 요구함으로써 상황을 확정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보통 성문화된 상시군사 복무명령을 발령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복무명령을 발령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복무명령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 프로젝트 또는 실행방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제는 그 통합 계획이 올바르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관련 당국은 공식적으로 군 장교나 지휘관 중 한 명을 이 임무에 임명해야 한다. 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통합 과정 중 수단과 목표들을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무력의 위협과 군사임무가 발전되어 나가고 무기보유자들은 군사작전을 통해 끊임 없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배워서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과정은 지속적이고 거의 끝나지 않는 과정이다. 따라서, 계층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통합 프로그램의 관리

복잡한 통합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는 고전적인 “사업계획 관리” 도구 및 기술이 요구된다. 통합 프로그램은 공식 문서화되어 있다. 통합의 현 수준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러한 문서들은 그 목표 및 책임사항과 통합 프로그램의 완수 시점을 뚜렷이 규정하고 있다. 통합 프로그램은 매년 계획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물론, 다양한 업무를 관리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의 임용도 함께 상술하고 있다.

경험 상, 국제인도법과/또는 인권법의 관리직위를 마련하면 통합과정을 가속화 하기 보다는 지체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나머지 지휘계통과 사이가 멀어진 이러한 관리직위는 때때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개는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군사작전 관리직위에 이러한 통합 프로그램의 관리 책임을 함께 맡기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모니터링과 평가 기구 또한 설립하여 이행과정을 감독하고 부분적인 목표들이 성취되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임무는 보통 감찰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권한을 가진 기구에 부여된다. 중간 단계 결과에 따라, 최고 지휘층의 승인을 위해 실행방안에 대한 조정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2.4 군사 정책으로의 통합

군사교리는 반드시 적법한 행위를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군사교리란, 그 원칙의 형식에 관계없이, 전략적, 군사작전적 및 전술 단계의 무력보유자들의 행동을 지도하는 모든 기준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사교리란 무력보유자들이 교육, 훈련을 받는데 기준이 되며 무력보유자들에게 공통된 용어를 규정하고 군사작전 중 의사결정과정, 전술과 행위를 규정지어 주는 모든 명령, 정책, 절차, 행동강령, 관련 교범,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법을 군사교리로 통합하는 것은 강령이나, 교본, 그리고 절차규정에 적용되는 법과 원칙들을 단순히 삼입 또는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보호받는 자와 목적물의 존중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는 수단 및 장치들과 함께,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관련 원칙들은 반드시 군사교리 요소들의 실재적이고 통합적인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교범과 절차의 개정은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준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현대 법의 집행 또는 전쟁에 따르는 도전과제는 복잡하므로, 국제인도법과/또

는 인권법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참모 중 한 직위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군사작전 또는 전술상의 문제에 있어, 임명된 참모(인사, 정보, 작전, 군수)들은 이런 점에서 그들이 어떻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 중 정보 공유 및 협력과 더불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이 마련되도록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문제도 간과되지 않고, 군 지휘관은 적절한 시기에 활용 가능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각기 다른 지휘계통 단계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행동 분야를 위한 관련 교본들은 반드시 상황에 적합하게 개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군사작전 중 맞닥뜨리게 되는 복잡 다단한 상황(예를 들면 주거지역내 군사 목표물이 존재할 때, 격렬한 시위 중 법과 질서를 지켜야할 때,)속에서 명령과 절차들, 그리고 교전 규칙들은 법을 준수하게 된다.

전투

법률 조항



군사작전상 연관관계



결과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종류의 공격들은 무차별적 공격으로 간주된다.

b)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소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공격

(제1 추가의정서 제51항 제5조)

어떻게 부수적인 손실과 예견된 군사적 이익을 가능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각각의 다른 사항과 관련하여 등급을 매길 수 있는가?

어떻게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각각의 그리고 모든 결정들을 위해 행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군사고리는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 군사적 이익과 부수적 피해의 정의
- 각기 다른 가능한 행동 방향 중 선택을 해야 할 경우, 등급 책정 방법
- 효과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와 의사결정 과정 중 군 지휘관을 위한 권고사항
- 균형과 결정의 기록 수단
- 정보장교와 군사작전 장교 또는 이와 같은 다른 장교들의 특정 책임

법의 집행

법률 조항



군사작전상 연관관계



결과

법집행관은 아주 필요할 경우, 그리고 그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법집행관 업무 수칙 제3조)

어떤 상황에서 무력이 사용될 수 있는가?

점진적인 그리고 비례적인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무력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필요성과 비례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 무력의 사용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과 필요성의 기본원칙 정의
- 필요성과 비례 사이에서 의사결정과정 상 효과적인 균형을 가능케 하는 수단과 장치들
- 균형과 결정의 기록 수단
- 상황평가 및 이에 대응하는 무력의 점진적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수준의 지휘체계에 있어서의 특정 책임

2.5 교육으로의 통합

법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수단과 장치들은 반드시 모든 교육 사항들에 통합되어야 한다.

교육이란 요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행할지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 중 적용되는 법의 내용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의 직접적인 단계이다. 교육시간 및 이론 실습의 비율은 교육생의 계급과 군별, 특기 또는 업무에 따라 교육생의 필요에 잘 맞춰 책정되어야 한다. 교육은 언제나 가능한 한 실제적이고 현실성이 있어야 하지만 교육생의 계급과 책임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차적으로 학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관련법률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개정된 군사교리와 절차에 의해 규정된, 법의 준수를 위한 수단, 방법과 장치들은 모든 교육사항들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교육과정들이 반드시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명백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이에 관해 언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언제나, 모든 군인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법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목에 법의 준수와 관련된 실재적인 딜레마를 포함시켜야 한다.

전투

법률 조항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 민간주인, 민간인 그리고 민간물자가 위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당한 보호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제1 추가의정서, 제57조 제1항)



군사작전상 연관관계

민간주인, 민간인, 민간물자란 무엇인가?

이들을 존중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는가?

이러한 조치들의 항시적 적용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결과

교육은 반드시 다음 사항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 민간주인, 민간인, 민간물자란 정확히 무엇인가?
- 피보호자와 물자가 위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지휘체계 내(다양한 단계와 전문분야에 따라) 책임사항
- 대안적 행동 방향을 모색하도록 인원을 준비시킴.
- 피보호자와 물자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도록 민간인 대피를 잘 계획하고 실행함.
- 민간인 대피를 계획하고 실행함.
- 안전 거리의 이행
- 상황에 따라 무기를 선택하고 부수적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그 무기의 효과를 관찰함.

법 집행

법률 조항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이 정한 이유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항)



군사작전상 연관관계

어떤 상황에서 자유가 줄어들 수 있는가?

체포와 억류가 자의적이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력의 사용과 개인의 안전할 권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는가?



결과

교육은 반드시 다음 사항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 체포와 억류가 적법할 수 있는 상황
- 자의적 체포와 억류에 해당되는 요소들
- 체포와 억류가 자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취해져야 하는 절차들
- 지휘체계에 따른 책임 및 자유의 박탈과 관련된 업무를 위한 전문 부서의 책임들
- 적법한 체포와 억류를 위한 수단과 방법들 그리고 그 행위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

2.6 훈련으로의 통합

훈련은 현실적인 방식으로 국제인도법 그리고/또는 국제인권법의 구성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무력보유자들에 대한 훈련은 요원들에게 법을 준수하면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다. 훈련은 장교와, 하사관, 병사들이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게 하고 올바른 반사행동을 습득하게 하여 제2의 천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오직 반복 연습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여 가르치는데 가장 적당하고 효과적인 사람은 직속상관이다.

법의 기본원칙들은, 개정된 군사교리, 전술과 절차들에 의해 제공된 법의 준수를 위한 수단, 방법, 장치와 함께, 매일의 훈련 속에 가능한 한 현실적인 것으로 포함되어야 함이 매우 중요하다. 그 내용의 수정 없이 기존의 훈련 프로그램에 국제인도법 그리고/또는 국제인권법 훈련을 몇 시간 더하는 것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실제적인 훈련임이 판명되어 왔다. 즉, 이러한 방법을 통해 참가자들은 몇 주 후까지 그 내용의 90%이상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체계에서 이론과 실전 훈련의 비율은 직급과 책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훈련이 가능한 한 실용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하며 향후 군사작전의 성공 만큼이나 법의 준수를 위해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훈련의 효과는 또한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군사작전 중 행동은 궁극적인 시험으로 남게되며, 조치 후의 재검토와 평가는 기존에 수립된 수단과 장치들의 유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일일 훈련과 연습을 통해 얻은 교훈들 또한 평가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만약 통합과정을 통해 수립된 수단과 장치들이, 군사요원들이 법을 준수토록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훈련을 통해 밝혀질 경우, 군사교리와 교육 단계에서 수정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훈련도 변경되어야 한다.

전투

법률 조항

포로는 포로가 된 후 가능한 신속히, 그들에게 위협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전투지역으로부터 떨어진 지역에 소재하는 수용소에 후송되어야 한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후송됨으로써 현재의 그들의 소재지에 머물러있는 것보다 더 큰 위협에 부딪히게 될 포로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위험지대에 체류시킬 수 있다.

포로는 전투지대로부터 후송을 기다리는 동안 불필요한 위협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제3 제네바협약 제19조)



군사작전상 연관관계

군대가 어떻게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상급 제대가 기대하는 대로 하급제대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전투원들이 어떻게 병참부대 및 의무대와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겠는가?

군사교리에 나와 있는 전투수단들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가?



결과

전투현장에서, 지도상에서, 혹은 컴퓨터에 의한 훈련 등 모든 훈련에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지휘체계의 인원들이 그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쟁포로의 처리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 하위 전투부대는 전쟁포로를 포획해야 하고;
- 집결지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고 병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 군수는 효과적으로 포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전 과정은 반드시 평가와 교훈을 얻는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군사교리와 교육단계를 포함하여 수정조치와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법의 집행

법률 조항

불법적이나 폭력적이지 않은 집회의 해산에 있어서 법집행관은 무력의 사용을 피해야 하나, 이것이 실질적이지 않을 때, 무력의 사용을 가능한 최소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력 사용 기본원칙 제13조)



군사작전상 연관관계

법집행관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비폭력적 불법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가?

무력이 사용되어야 한다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최소한의” 그리고 “필요한” 수준은 무엇인가?

정책과 절차 그리고 교육에 제공된 수단과 장치들이 적법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가능케 하는가?



결과

훈련은 법집행관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 경험을 얻도록 한다.

따라서,

- 법집행관은 상황에 따라 활용 가능한 다양한 평화적 수단(예를 들면, 협상, 설득, 군중을 위한 대피로 마련)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하급집행관은 위협에 대해 적합하게, 비례적으로 그리고 재량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전 과정은 평가와 교훈 습득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정책과 절차 그리고 교육단계를 포함하여 수단의 교정과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2.7 장비

장비는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가능케 해야 한다.

장비는 군요원이 법에 알맞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제공해야 한다. 최고 사령부는 군요원에게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의 지휘부는 특정 무기의 사용(즉, 무기 자체 및 사용방법)이 몇몇 상황에서 또는 모든 상황에서 국제인도법 그리고/또는 국제인권법에 의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장비가 법의 준수를 가능케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실전과 가장 가까운 상황 훈련을 통해 시험되어야 한다.

무기류 이외에, 군사작전 중간과 군사작전 후 군병력이 사상자를 수색하고, 처리, 대피시키는 연습은 의무대의 장비가 충분하고 적합한지를 보여줄 것이다. 예를 들어, 바퀴 달린 앰블런스나 전차와 같이 무거운 궤도차량에 의해 갈려진 땅이나 폭동 이후 파편과 잔해로 어지러운 도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될 것이다.

전투

법률 조항

과도한 상해 및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성질의 무기, 투사물, 물자, 전투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1 추가의정서 제35조 제2항)



군사작전상 연관관계

의도된 군사적 목적 또는 예견된 군사적 이득이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상해를 입게 되는가?

앞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근거하여, 상해가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이를 결정하는 데 어떤 특정 전문지식이 요구되는가?

전쟁수단과 방법이 도입되기 전 이들의 합법성을 누가 결정 하는가?

적법한 수단과 방법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누가 확인 하는가?



결과

재검토 장치는 확립되어야 하며, 그 평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최종 책임은 법률, 규칙, 행정명령, 지시 또는 지침 등에 확립되어 있는 개인, 또는 위원회에 있다.
- 이러한 개인 또는 위원회는 재검토와 의사 결정 과정을 명확히 한다.
- 국방부 또는 부처 상호간 책임
- 타 부서나 부처의 대표자로부터 수행된 재검토
- 기록은 체계적으로 보존

전투수단에 대한 재검토 뿐만 아니라, 지휘계통에서는 군부대가 전투수단을 불법적인 것으로 변경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법의 집행

법률 조항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집행관은 무력과 화력에 호소하기 전, 가능한 비폭력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법 집행관은 오직 다른 수단이 효과가 없거나 또는 의도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보장이 없을 때만 무력과 화력을 사용할 수 없다.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력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



군사작전상 연관관계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력의 사용을 지체시킬 수 있는 비폭력적 수단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수단들이 공격에 비례하여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한 명의 장교가 얼마만큼의 장비를 합리적으로 소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



결과

법집행관은 다음의 장비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 적합한 보호 장구와 무력 및 화력의 사용을 지연시킬 수 있는 기타 장비
-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비폭력적 수단의 범위와 장소 및 범법자와 교신할 수 있는 수단의 범위
- 법집행관이 집진적이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수단의 범위

법집행관은 그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갖가지 수단들이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출로 작전을 수행하는 법집행관은 활용가능한 수단 모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교신할 수 있어야 하며, 협상이나 분쟁 해결과 같은 다른 기술들에 정통해야 한다.

팀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집행관들은 개인적으로 또한 팀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수단에 대해 정통해야 한다.

2.8 효과적인 제재

제재조치는 반드시 명백하고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제재는 중요한 예방책이다. 경험에 따르면 제재조치가 명백할수록 적용에 대한 보다 나은 예측이 가능해지고 더욱 억제력을 갖게 된다. 또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는 명령과 규율을 집행하는 수단의 계층과 전 지휘체계가 근본적 가치를 확고히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이다.

제재는 형벌 또는 징계수단을 통해 집행될 수 있다. 형법수단이 의심의 여지없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모든 지휘체계에 걸쳐 효과적인 징계 제재조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조치들은 실제로 직속상관의 책임 하에 있으며, 다음의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즉, 행정 제재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으며 위반자의 동료에게 매우 명백한 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이 제재조치의 억제효과는 즉각적이고,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 묵인되거나 허용되기까지 하는 상황 발생을 막을 수 있다.

3.1 ICRC와 국제법

ICRC는 국제인도법과 폭력 상황에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기본 규칙들의 준수를 증진시킨다.

ICRC의 인도적 임무는 무력충돌과 내부폭력의 희생자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ICRC는 국제인도법과 관련 국제인권법 조항들을 증진시키고 강화시킴으로써 고통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ICRC는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핵심적 인도주의 임무와 국제인도법의 증진이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규약은 무력충돌에 이르지 않는 폭력 상황에서 그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ICRC에게 광범위한 인도적 주도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력사용이 초래하는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ICRC는 전체 국제인권법 조약의 다양한 분야를 모두 언급하지 아니하고, 폭력상황에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본 규정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작지만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국제인권법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다.



Boris Heger/ICRC

제3장 ICRC 지원

ICRC의 주도권

ICRC의 주도권은 국제적십자적신월 운동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4년마다 제네바협약 가입당사국 및 적십자/적신월 기구 (ICRC,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 각 회원사)의 대표단이 모두 참가하는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에서 채택된다.

동 규약의 제5조는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내 ICRC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개요를 약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ICRC는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지식을 이해하고 보급하며 그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다.” (제5조 제2항 (g)) 규약은 또한 ICRC가 “특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이며 중재자로서, 그 임무에 속하는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검토를 요하는 모든 문제를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5조 제3항)

인간보호의 기본 규칙

ICRC가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참고해야 하는 국제인권법의 모든 기본원칙을 열거하는 것은 동책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범들이다.

1. 생명 및 물리적, 심리적 평안 그리고 인간존엄의 보호 (핵심부분에 포함된 규칙들, 아동병사 징집)
2. 법집행관에 의한 무력사용(적법성, 적합성, 비례성, 금지무기류의 사용금지)
3.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사법적 또는 절차상의 보장, 자의적 체포 및 억류 금지)
4.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킬 의무(식량, 물, 위생, 의류, 주거, 의료)
5. 가족단위에 대한 존중(이에 대한 부적당한 제한 금지)
6. 실종자 및 그들의 가족(비밀 및 비공개 된 억류의 금지, 가족과 소식을 주고 받을 권리)
7. 개인의 이동 (자의적 이동 또는 추방 금지, 안전 및 피난처를 추구할 권리)
8. 재산(불법적 또는 자의적 파괴 또는 징발에 대한 박탈 금지)
9. 교육 및 종교적 참배 (점령 상황 또는 자유박탈의 상황 하에서의 부적절한 제한의 금지)

기본요건이 충족될 때, ICRC는 법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법은 분명히 해당 조약의 계약 당사국에 귀속되는 것이지만, ICRC에 귀속되지 않는다. 법의 통합에 대한 책임 또한 그러하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활약하고 정부 당국 및 무력보유자들과 대화를 지속해 온 덕분에, ICRC는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원하는데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왔다. 단순히 법률규범의 교육 그 자체로는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ICRC는 지난 20년간 점차적으로 국제인도법의 보급에서 그 법의 통합으로 그 접근방법을 바꾸어 왔다.

관련당국이 성실히 임무를 다하고 장기적으로 통합과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ICRC는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에 의해 보장된 지원역할(아래 참조)을 다하고, 법령에 의해 규정된 주도권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통합과정 중 무력보유자들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ICRC는 제네바 본부에 전문부서를 두고 있으며 사업 현장에는 수많은 전문 요원

(군 및 경찰 복무 유경험자)을 거느리고 있다. ICRC는 무력보유자들에게 실제적 기술훈련을 제공하지 않는다: ICRC는 무력보유자들이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법적 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무력보유자들이 동 법의 군사작전 상 연관관계가 무엇인지, 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요원들간 네트워크를 통해 ICRC는 현재 전세계 무력보유자들에 의해 진행되는 관련 법률의 통합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결의사항 제21호

1977년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를 결의한 대표자회의에서는 역시 결의사항 제21호를 채택하였고 이를 통해 관련 당국에 다음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당사국은 각국이 자국의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경우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지원과 자문을 얻어, 특히 군대 및 관련 행정당국에 국제인도법을 교육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a)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제인도법 지식을 보급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한다.

(a) 국제인도법 교육을 지원할 자료의 출판과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의 보급을 위한 적절한 정보의 유포

(b) 자발적 발의 혹은 정부나 각국 회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인도법에 대한 세미나 및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 및 적절한 기관과 협력

무력보유자들에 대한 ICRC의 지원

첫 단계로 ICRC는, 관련 당국 및 무력보유자들의 지휘부와 국제인도법의 통합 관련 책임사항 및 그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쟁점들에 관해 논의한다.

지휘부가 ICRC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ICRC는 상시 명령 및 프로그램 초안 작성에 있어 자문을 제공한다. 전 과정 중, 그리고 그 정황에 따라, ICRC는 교관, 훈련자, 또는 법률 자문관에게 관련 법률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군사교리, 교과과정, 교육자료 및 교범의 제작 또는 개정을 위한 특별 세미나 워크숍을 실시하기도 한다. 필요한 경우, ICRC는 비디오나 대화식 CD-ROM 또는 DVD와 같은 더욱 첨단화된 자료의 제작을 지원하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ICRC의 전문요원들은 점점 더 군대의 작전현장과 컴퓨터화된 지휘소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무력충돌 중 ICRC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에 더하여, ICRC의 요원들은 관련법의 통

합을 확실시하기 위해, 훈련 조정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국제적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일부 국가가 계약을 맺은 사기업과도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ICRC의 지원 범위

ICRC는 무력보유자들이 법을 해석하거나, 군사작전상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그 결과물을 확인해 나가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최종 조치, 즉 새로운 전술 교범을 작성하거나 새 교과과정을 도입하거나, 군사교리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국가와 법 집행기관의 책임으로 분명히 남아 있다.

임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ICRC는 분쟁 발생 시,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구호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한다. 또한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인도법과 보편적인 인도주의 원칙을 보급하고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ICRC는 1863년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창설 모체이다.



ICRC